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호자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의무적
통지 등〉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33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보호자에 대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통지 의무화	3
2.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등 ...	9
3. 개정안 부칙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민전 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5. 12. 26.

3. 회 부 일 : 2025. 12.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력 진단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교육부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또한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

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Ⅲ. 검토의견

1. 보호자에 대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통지 의무화(안 제7조제1항)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장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 ----- ----- ----- ----- ----- ----- --통지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

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과정에 활용되는데,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바탕으로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학생은 학교 및 필요시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제공받게 됨²⁾.

□ 한편,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³⁾에 따라 학습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과정에서 학부모(보호자)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진단검사 결과 등을 학부모(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진단·지원 과정에서

1)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2022.10. 교육부

학부모(보호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보급하였음.

□ 또한 대법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⁴⁾」에 대한 판결에서 「기초학력 보장법」의 취지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유를 통해 학생, 학부모 및 학교가 모두 연계하여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이 적시에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시하였음⁵⁾.

□ 현행법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

4) 2023년 서울시의회는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동 조례안을 의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에 해당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대법원은 해당 조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23추5054(2025.05.15.)]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 공개)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등의 현황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위 조례안 규정의 취지는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서울특별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도 증진 등에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위 조례안 규정이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조례안 규정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 공유를 통해 학생, 학부모 및 학교가 모두 연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이 적시에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출처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원교육 실시를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등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포함한 기초학력 보장 체계에서 보호자의 역할은 필수적으로 보이는바, 보호자에게 진단검사의 결과 통지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목적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⁶⁾, 기초학력진단검사 후 학교장이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신속히 제공한다면 “학습지원교육”이 적시에 제공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 보호자의 알권리도 보장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가정과 연계한 적절한 기초학력 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용 의견임.
- 한편, 교육위원회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의 개정안⁷⁾이 회부되어 심사중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6)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7)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8)」,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4)」

[개정안 비교]

김민전의원안	고민정의의원안	조정훈의원안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 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 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 단하는 검사(이하 “기초 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 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현행과 같음)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그 결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를 외부 에 공개(제1항에 따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보호자가 기초학 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 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 의 장은 이를 학생의 보 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 다.
③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 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 검사 결과 등 관련된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 검사의 내용·실시 및 공 개 범위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④ ----- ---내용·실시,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과 국회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자 료 제출-----.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8]

<시·도교육청>

○ 대구 외 6개 시도 : 신중검토

- 검사결과 의무 통지 시 검사의 취지가 성적 공개로 변질되고, 학생의 보호자 간 결과 공유로 학교 서열화, 실적 위주 교육 등 우려
- 진단검사 결과 정리·통지, 학부모 민원 대응 등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부담 초래
- 결과 의무 통지 시,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낙인으로 정서적 위축, 학습 동기 저하 등 학생 성장 저해 우려
- 현행 체계로도 보호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상황에서 이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규제 중심의 입법이 될 가능성 우려

8) 단위학교에서는 미도달 학생의 학습 불안과 자존감 저하, 부진아라는 낙인 강화 우려 및 학생 간 줄 세우기와 서열화 조장이 우려되므로 **신중검토 의견**과 학생의 발달 단계, 정서 상태,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통지 시기·방법 조정 가능 필요하다는 **일부수정 의견**이 있음.

2.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감에게 검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안 제7조제2항),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등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②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그 결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③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

	<u>단검사 결과 등 관련된 자료의</u> <u>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u> <u>우 교육감은 정당한 사유가 없</u> <u>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비공개로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가 제출 및 보고되게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수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⁹⁾
-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9)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년별 학습지원대상학생수, 기초학력 관련 각종 현황이 수합되어 보고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미 교육부의 기초학력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추진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또한 개정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결과에는 단위 학교의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가 외부에 공표될 경우 학교 및 지역간 서열화가 우려되므로 이 또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도입 취지가 학생 개개인의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진단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표에 따른 부작용, 검사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기초학력 관련 현황을 수합·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 의견임.
- 한편, 교육위원회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¹¹⁾이 회부되어 심사 중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10)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1)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8)」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제2항 관련¹²⁾

<시·도교육청>

○ 서울 외 12개 시도 : 신중검토

- 진단검사 결과 관련 학교·지역 간 서열화, 과열 경쟁, 사교육비 증가 등 우려되고, 학습 부진에 대한 낙인 효과로 학생·보호자가 검사를 기피하여, 조기 발견 및 지원이라는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취지가 저해되며, 일괄적 자료 요구로 행정업무 증가 및 학생의 민감 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우려가 있음.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2항,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추진 실적과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중검토

- 기초학력 진단/지원은 교육감의 책무이며, 국가 차원에서 진단 결과 관리·감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하고, 시도 서열 등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절차가 필요함

제3항 관련¹³⁾

<시·도교육청>

○ 대구 외 9개 시도 : 신중검토

-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 제3항과 중복되어 법률 개정의 실익 없고,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제출 의무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학교 현장의 교육적·행정적 부담 증가가 우려됨

○ 전북 : 일부수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필요시 교육부에 요청하여 활용

12) 단위학교에서는 지역·학교 간 서열화 및 학교 간 경쟁과 교육 격차 심화가 우려되며, 수치 관리를 위한 파행적 지도와 '학습 부진' 낙인으로 학습 의욕 상실 등 역효과 우려로 신중 검토 의견이 있음.

13) 단위학교에서는 수치 관리를 위한 파행적 지도 및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 등이 우려되고, 학생을 부진아라는 낙인을 찍어 학습 의욕을 상실시키는 역효과가 발생되며, 과도한 행정 업무 증가 초래로 학생 지도 시간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검토 의견이 있음.

3.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또는 부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3개월, 대통령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6개월,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데¹⁴⁾, 개정안에서는 자료 제출과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안 부칙과 같이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

14)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821